

제1절 문화재 조사현황

문화재란 독일어로 ‘Kulturgüter’의 번역어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재가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은 물론이고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재는 물질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구전·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양식 등 인종적·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고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네 가지로 정의·분류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네 가지로 분류된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는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로 분류되고,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유형문화재로 나뉘며,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나뉘며,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와 지방민속자료로 나뉘며, 이 외의 문화재는 문화재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1. 국보

-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 하여야 한다.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2. 보물

1) 건조물

- ① 목조건축물류는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② 석조건축물류는 석굴·석탑·전탑·부도·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③ 분묘는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2) 고고자료

- ①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 ②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 패총, 또는 사지, 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전세품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 ④ 종교, 교육, 학예, 산업, 정치, 군사, 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3) 공예품

- ① 형태, 품질, 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무구

- ①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이어야 한다.
- ②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이어야 한다.

5) 전적·서적·고문서

- ① 전적류는 사본류에 있어서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

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② 서적류는 사경, 어필, 명가필적, 고필, 묵적, 현판, 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것 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③ 고문서류는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6) 회화·조각

① 형태, 품질, 기법, 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어야 한다.

②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중요하여야 한다.

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에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과 수리 등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

4. 사적

사적은 패총과 수혈주거지 등을 비롯한 유사 이전의 유적, 사지와 사우지 등을 포함한 제사·신앙에 대한 유적, 성과과 봉수대 등을 포함한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고도와 토목 등을 비롯한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서원과 향교 등을 포함한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분묘와 원지 등을 포함한 분묘·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5. 명승

경승지나 원지, 화초나 어충류 서식지, 저명한 협곡이나 폭포, 특색 있는 산악이나 하천, 등과 같이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의 조형물이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6. 천연기념물

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에서 한국 특유의 것으로 그 서식지나 자생지와 동굴과 습지 등에서 자생이나 서식하는 개체를 비롯하여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지질과 광물에서 암석이나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지층이나 동굴 등으로 학술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7. 중요민속자료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이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8. 지방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지방지정문화재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 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순으로 구분한다.

9.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이상 지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어야 한다.

-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10.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1) 매장문화재는 민법에서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2010년에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문화재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2) 일반동산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물·국보·중요민속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년 이상 된 동산문화재이다. 단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향토 유적·유물이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가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보가 보물보다는 중요하다거나 지방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지정문화재 등의 구분은 지정과 관리의 주체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또한 보물 가운데서 인류문화적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치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문화재의 지정번호가 빠른 것이 우수하고 늦은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될 시기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는 어떠한 상태로 관리가 되던 모두 소중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다. 즉 문화재를 나누는 기준이 문화재의 가치나 우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기념물이나 민속자료라고 해서 학문적·예술적 비중이 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생활 속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문화재라면 오히려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된다. 결과적으로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문화재는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표 56> 울진의 지정별·분야별 문화재 수

국가 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2	4	.	1	6	.	.	2	10	.	3	1	10

<표 57> 울진의 지정별·분야별 문화재명과 지정번호 및 소재지

지정명	분류명	문화재명	지정 번호	소재지	비고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장양수 흥파	제181호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708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제242호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	
	보물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제498호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4-1	
		울진 불영사 웅진전	제730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제1201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불영사 영산회상도	제1272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울진 불영사 불연	제2127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명승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제6호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585필지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제96호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1	
	천연기념물	울진 성류굴	제155호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외 3필지	
		울진 후정리 향나무	제158호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7-2	
		울진 화성리 향나무	제312호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산190외 1필지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제408호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146-1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제409호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2	
	국가등록문화재	울진 행곡교회	제286호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102	
		울진 용장교회	제287호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274-2	
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불영사 삼층석탑	제135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평해 북천교비	제361호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66-1	
		울진장씨 고산성파 소장 고문서	제395호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122점
		장백손 교지	제396호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31점
		울진 불영사 불패	제398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	제423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2	
		울진 대풍헌 현판 일괄	제441호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02	12점
		울진 광흥사 소장 명양경	제480호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1135	

지정명	분류명	문화재명	지정 번호	소재지	비고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유형문화재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	제520호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1135	23점
		울진 주인리의 황금소나무	제151호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 136	
		울진 죽변 등대	제154호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23	
	민속문화재	울진 대풍헌	제165호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02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	제156호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433	
		울진향교 대성전	제159호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53-1	
	문화재 자료	평해향교 대성전	제160호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01	
		불영사 부도	제162호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34	
		울진 소광리 황장봉계 표석	제300호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251-1	
		울진 내성행상 불망비	제310호	울진군 북면 두천리 206-1	
		배잠사지 당간지주	제472호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923-7	
		울진 매화리 윤광수 가옥	제494호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642	
		울진 대풍헌 소장 문서	제511호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02	2점
		울진 광도사 신중도	제662호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0-43	
	탱화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	제553호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936	

<표 58> 울진의 문화재 유적별 통계

구분	울진읍	평해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합계	
1	명승지	1			3						4	
2	선사유적				1		1			1	3	
3	선사시대분묘	1		5		4		3		1	14	
4	고분	1	1	2		1	4	3	1	1	15	
5	분묘			1				1		1	3	
6	유물산포지	1		6	7	3	1	4	2	3	1	28
7	요지	2		9		3	2	1				17
8	사지	5	1	2	1	3	5	1	3	1	25	
9	사찰	1			3				1		5	
10	불상		1	1							2	
11	불화		1		2				1		4	
12	탑	1	1	1	1	1			1		6	

구분	울진읍	평해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합계
13 석조	1			1	1			1			4
14 성	3	3		2	2		1	2	3		16
15 봉수	1		1		1		2		1		6
16 태봉		3	1					1			5
17 민속	18	20	35	10	11	15	24	18	7	5	163
18 역·원								1			1
19 관아		1									1
20 향교	2	2									4
21 서원·서당			1		1	1	3	1	1		8
22 누·정	3		1		1	1	2				8
23 사묘	4		1			1	1		1	1	9
24 고가	10	6	29	5	21	47	30	15	9		172
25 정려				1	1			1			3
26 금석	6	8	13	3		4	8	7	2	2	53
27 서화·전적	3						2	1		1	7
28 보호수(보호림)	4	3	3	5	8	1	4	4	4	1	37
29 근대건축	2	3			1	4			3	1	14
30 산업구조물									1	1	2
31 기타유적	3	2		2	1	1		1		1	11
합 계	73	56	112	43	68	87	91	62	38	20	650

* 울진군 문화재 공식적 통계는 20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확인된 유적 일부를 가감하였음.

<표 59> 울진의 문화재 시대별 통계

구분	울진읍	평해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합계
1 선사	1		6		7		5		2	1	22
2 선사~삼국			1								1
3 삼국	1	1	3	1	2	4	3	3	6	2	26
4 삼국~고려			1			1					2
5 삼국~조선			1								1
6 통일신라	1			3	3			1			8
7 고려	7	2	3	1	3	1	3	2	2	1	25

구분	울진읍	평해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합계
8 고려~조선		1	1	4			1				7
9 조선	25	19	30	13	25	10	27	19	6	3	177
10 조선~근대		3	2		1	1					7
11 근대	14	8	25	4	13	51	26	13	13	6	173
12 시대미상	24	22	39	17	14	19	26	24	9	7	201
합 계	73	56	112	43	68	87	91	62	38	20	

* 울진군 문화재 공식적 통계는 20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확인된 유적 일부를 가감하였음.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

1. 국보⁵⁶⁶

1) 울진 봉평리 신라비

봉평리 신라비의 지정번호는 국보 제242호이고 지정일자는 1988년 11월 4일이며 소유자는 국유이고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이 울진 봉평 신라비는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고,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524년(법흥왕 11)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비이다.

1988년 3월 객토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 비는 발견된 장소를 원래의 위치로 생각하고 확인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원래의 위치가 아님이 밝혀져 발견된 장소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마을 입구에 비각을 세워 보호하였다가 2008년 전시관으로 이전하였다.

신라가 영토 확장으로 동해안 지역의 삼척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곳 거벌모라 지역을 새로 편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이 발생하자 신라에서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 육부회의를 열고 대인을 파견하여 벌을 주는 한편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울진지역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뒤 이 비가 세워지기 얼마 전에 대군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해결한 뒤 당시의 법흥왕과 13인의 신료들이 모여 그에 대한 사후 처리의 일환

566.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주된 내용은 울진군·안동대학교박물관, 1991, 『울진의 문화재』; 울진군, 2001, 『울진군지』의 제2장 주옹영 교수 집필에서 변동이 없는 문화재 부분.;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울진군·에서 발췌하여 수정·가필하였다.